’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

1 추진 배경

○ **폭염 재난 방지**를 위해 **범정부 차원 대책기간**(5.15. ~ 9.30.)을 **운영**, 우리부는 노동자 **온열질환 예방**을 위한 **건강보호 대책** 추진

* (대통령 말씀사항, ’25.7.10.) ‘117년 만의 무더위…가용한 행정력 총동원’ 신속 집행 주문

❖ **이번 대책은 폭염 취약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❶「폭염안전 특별대책반」을 구성·운영하고, ❷ 폭염 취약사업장 선정 및 폭염상황을 신속 전파**

○ **❸ 건설·물류·이동·이주노동자 등 취약 직종을 중점관리**하고 ❹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장 **기술 및 재정지원 추진**

2 기후전망 및 온열질환 산재 현황

○ **(기후전망)** ’25년 여름철 **평균기온**은 **25.7℃**로 **기상관측 이래 최고치*** **’26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**(’91년 ~ ’20년)**보다 높을 것으로**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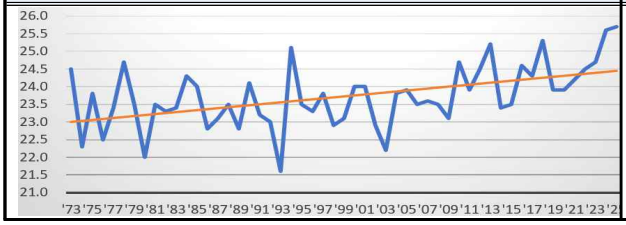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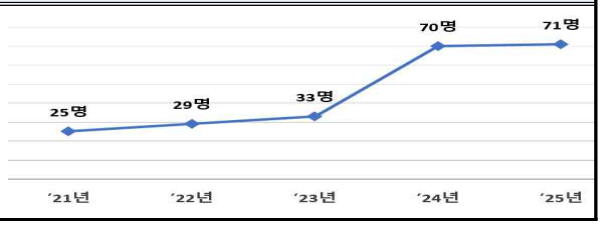
* 평년(’91 ~ ’20) 23.7℃ → ’23년 24.7℃ → ’24년 25.6℃ → **‘25년 25.7℃ (역대1위)**

○ **(산업재해)** 최근 5년간(’21~’25년) 폭염으로 인한 **온열질환 산재는 총 228명** 발생, 매년 **온열질환자는 증가*** 추세

* (’21년) 25명 → (’22년) 29명 → (’23년) 33명 → (’24년) 70명 → (’25년) 71명

- **(업종별)**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**온열질환 산재 총 228명 중 건설업 106명**(46.5%), **제조업 33명**(14.5%), **시설관리업 23명**(10.1%) 順

- **(규모별)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** 폭염으로 인한 **온열질환자는 162명**(71.0%) 발생 ※ 5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전체의 58.2%

여름철 평균기온 추이(’73 ~ ’25년)	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현황(연도별)
	

3 주요 추진 내용

1 현장 중심의 「폭염안전 특별대책반」 가동

○ **(대응체계)** 본부·지방관서별로 **「폭염안전 특별대책반*」**을 구성하여 **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**와 **협업**하여 **현장 예방활동 추진**

* 공단, 민간재해예방기관, 업종별 협단체 등 참여하는 특별대책반 구성·운영 (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, 지방관서는 지방관서장이 총괄)

○ **(폭염상황) 폭염 취약사업장** 대상으로 **중대재해사이렌**을 활용, 폭염특보 등 **기상상황 및 온열질환 재해사례**(사망자 포함) **전파**

- 또한, 폭염을 건강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**사업주의 보건조치 내용으로 의무화 된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*」을 상시 안내**

* **❶ 시원한 물, ❷ 냉방장치, ❸ 휴식(2시간마다 20분), ❹ 보냉장구 지급, ❺ 119 신고**

○ **(감독·점검)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자체점검**(5.15.~5.30.) 실시, 폭염안전 **감독 및 점검 물량 증대***를 통해 **촘촘한 사업장 관리**

* ▲(폭염감독) '26년1,000개소(300개소⇧), ▲(병행점검) '26년15,000개소(11,000개소⇧)

2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

○ 기상청에서 폭염으로 인한 **사망 등 중대피해 발생 가능성**이 **높은 극단적 고온*이 예상**되는 경우 **'폭염중대경보'** 신설

* **일 최고 체감온도(38℃ 이상)** 하루 이상 예상 시

○ **폭염중대경보 도입**(기상청)**으로 「폭염 단계별 작업중지」**가 **준수**되도록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포함하여 **폭염 취약사업장**에 적극 안내

- **체감온도 35℃ 이상 시** 옥외작업을 강행하다 **온열질환 사망자**가 발생할 경우 **즉시 작업중지 명령,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**

[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]

■ **(체감온도 33℃ 이상, 폭염주의보) 작업시간대 조정** 또는 옥외작업 단축
■ **(체감온도 35℃ 이상, 폭염경보) 무더위 시간대**(14시~17시) **옥외작업 중지**
■ **(체감온도 38℃ 이상, 폭염중대경보)** 긴급조치 작업 외 **옥외작업 중지**

3 폭염 취약 업종별 주요 대책

○ **(건설업)** ’25년 **온열질환 발생 건설사의 전국 시공현장 관리*** **및 특보 발령** 시 **기관장** 점검 및 **감독관 유선지도** 등 **관리 강화**

*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및 NDMS 신고 건설사(86개사)의 전국 시공현장에 대해 재발방지계획서 수보 → 폭염 특보 시 현장확인

- 폭염으로 인한 **공사기간 지연 시** 발주자에게 별도의 지체상금 없이 **공사기간 연장을 요청**할 수 있도록 관련 **제도*** **안내**

* 산안법 제70조 :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기상재해 추가(’26.7월 시행 예정)

○ **(물류·택배)**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시간 부여 등 **온열환경 개선 확인, 컨베이어·분류·하역 등 취약작업** 안전공단 실태 확인(미준수 시 감독 연계)

○ **(조선업)** 체감온도 기준으로 휴식부여 및 작업중지(권고) 이행 지도, **용접 및 설비·정비 등 작업 수행하는** 사내 협력사 포함하여 확인

○ **(공공분야)** 지방정부·공공근로·교육청(급식실) 등 **자체점검 개선** 지도, 온열환경 미흡 **급식실 등 안전공단 기술지원**(미준수 시 감독 연계)

4 폭염 취약 직종 중심의 기술 및 재정지원

○ **(이동노동자) 온열질환 예방대책 제출**(~5.30.)**, 쉼터 정보*** 제공하여 **생수나눔**(50만병) **캠페인 추진,** 8대배달플랫폼사 업무협약 체결

* 지방정부 전수점검(~ 4.30.) → 관계부처 합동 표본점검 추진(5.4. ~ 5.13., 안전공단)

○ **(이주노동자)**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간담회 개최 등 **협업 추진**하여 **18개국 모국어 OPS** 배포, **지방정부 합동점검**(200개소. 7.1. ~ 31.) 실시

○ **(재정지원 확대)** 폭염 취약 **소규모 사업장**(50인 미만)**에 이동식에어컨 등 재정지원 확대**(’25. 200억원→’26. 280억원) 및 **물품지원*** 신설(’26. 15억원)

* 지도·점검 및 기술지원 시 온습도계, 쿨키트 등 예방 물품 현장 보급 병행

○ **(기술지원 강화) 민간재해예방기관 자율개선 지도**(14만개) 및 **안전공단 일터지킴이***를 통한 폭염 취약사업장 **상시 패트롤 점검**

* ▲건설업 730명 ▲제조업 200명 ▲조선업 70명

첨부 1 여름철 폭염 「온열질환 예방수칙」

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



18개 모국어 번역본

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℃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.

온열질환 예방조치

- 작업장소에 온·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
-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
-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(쉼터 및 그늘진 장소) 설치



체감온도 계산기

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

물	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
냉방장치	폭염작업 시 (이동식)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 · 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
휴식	체감온도 31℃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℃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
보냉장구	냉각의류,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
119 신고	온열질환자 ·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

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

체감온도 33℃ 이상 폭염주의보	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체감온도 35℃ 이상 폭염경보	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
체감온도 38℃ 이상 폭염중대경보	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OPEN

온열질환 민감군 관리

온열질환 민감군

- 폭염작업 신규배치자
-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
- 고령자, 고혈압·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



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

-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단계적 증가
- 주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
-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
- 폭염작업 시간 단축, 휴식 시간 추가 배정

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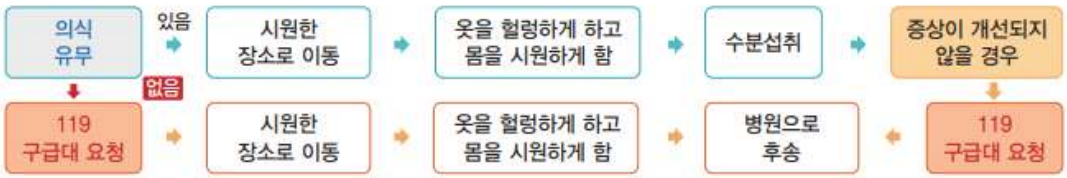
*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

온열질환 증상

- 평소보다 높은 체온, 땀을 많이 흘림, 어지러움, 메스꺼움, 근육 경련, 의식 저하

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

-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.
-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.
-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. ※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
-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.



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

밀폐공간은 '질식사망 위험공간'입니다. 폭염 시 매우 위험합니다.

- 밀폐공간(탱크 · 저장용기의 내부, 맨홀 등)은 기온 상승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'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'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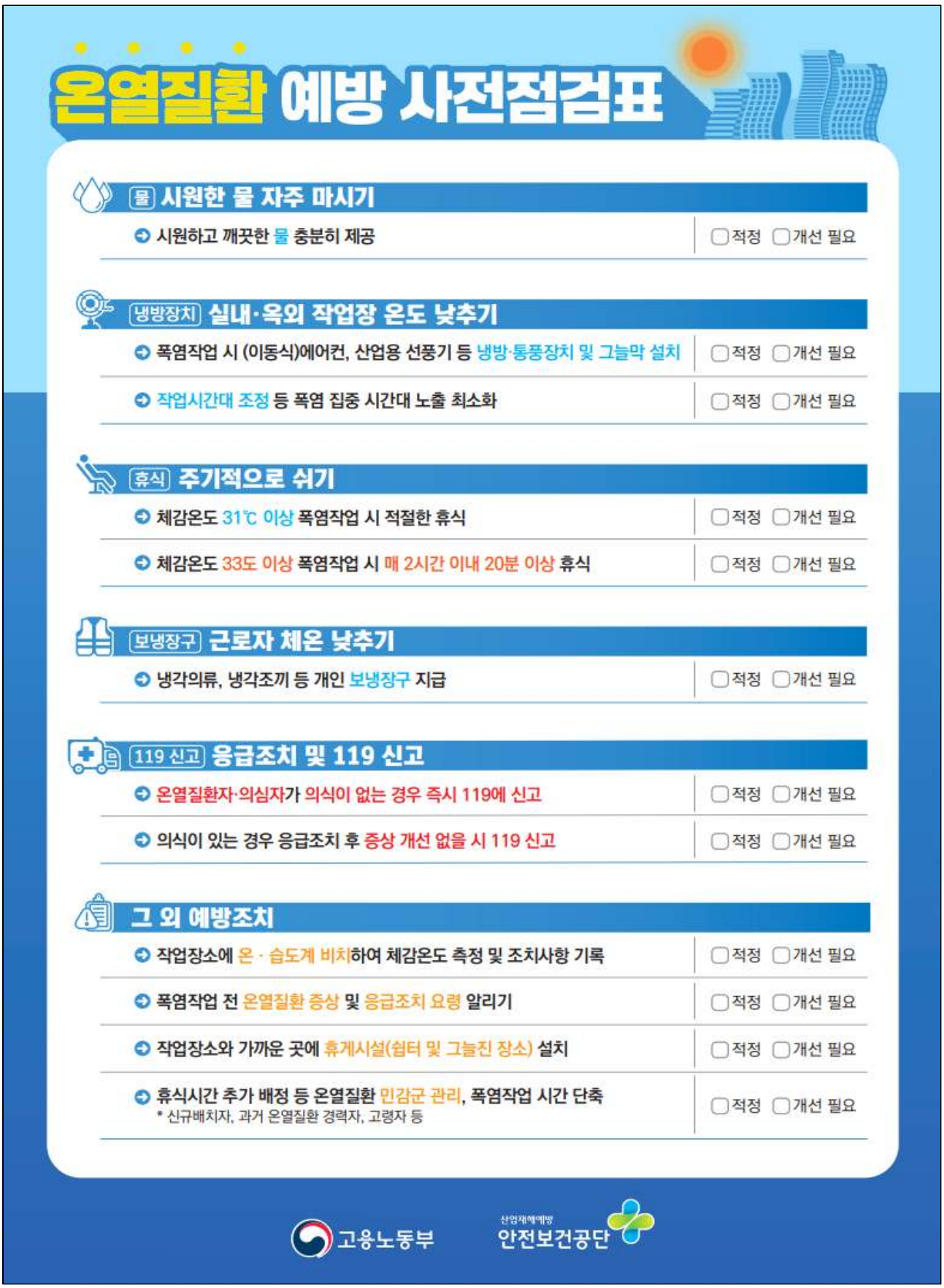
반드시 「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」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❶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
❷ 작업전 · 작업중 지속적인 환기
❸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

※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('25.12.1) 주요내용
❶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❷ 측정결과 기록 · 보존 ❸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❹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· 교육 강조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

첨부 2 **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**



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점검표



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

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여부	☐설치 ☐미설치

크기 최소 바닥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

최소 바닥면적 6㎡ 이상,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2.1m 이상	☐적정 ☐개선 필요
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였는지 여부	☐적정 ☐개선 필요

위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설치

휴식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곳에 설치 *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% 넘지 않는 곳에 위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화재폭발, 유해물질, 분진 및 소음 노출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
온도·습도·조명·환기 적정 기준 준수

적정 온도(18~28도)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설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적정 습도(50~55%)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설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적정 조도(100~200럭스)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설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	☐적정 ☐개선 필요

비품 구비 및 관리

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	☐적정 ☐개선 필요
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	☐적정 ☐개선 필요
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	☐적정 ☐개선 필요
관리 담당자 지정	☐적정 ☐개선 필요

목적 외 사용금지

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	☐적정 ☐개선 필요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참고 3 업종별 온열질환 주요사례

업종별 온열질환 주요사례



건설업

-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(60세, 열사병)
 - » 건설현장의 철근작업은 복사열 노출 위험이 크므로 민감군 관리와 열순응 조치 강화 필요
- 콘크리트 타설 후 식사를 마친 노동자가 식당 인근에서 쓰러져 병원 치료 중 사망(52세, 열사병)
 - » 작업 종료 직후 또는 휴식 중 쓰러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작업 전·후까지 포함한 전주기 관리 필요

조선·항만업

- 조선소 용접 작업 중 어지러움과 탈진 증상이 나타나 휴식했으나 병원 후송(34세, 열탈진)
 - » 조선업 용접작업으로 열노출 위험이 크므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준수 철저 및 민감군 관리와 열순응 조치 강화 필요
- 체감온도 35도~40도의 폭염속에서 종일 땀이 범벅된 상태로 양하 및 적하 작업을 실시하고 퇴근 무렵 쓰러짐(64세, 열탈진)
 - » 항만업은 옥외 고강도 중량물 취급으로 폭염에 취약하므로 민감군 관리, 열순응 조치 강화 필요

운수·창고업

- 물류센터 분류작업을 마친 후 조기 퇴근하여 계단에서 휴식하던 중 갑자기 쓰러짐(44세, 열사병)
 - » 물류센터는 냉방·환기 시설이 부족해 폭염에 취약하므로,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준수 철저
- 택배 배송 작업 후 쓰러짐(40세, 열탈진)
 - » 택배업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민감군 관리, 열순응 조치 강화 필요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PEN

음식업(학교 조리실 등)



- 급식 조리실의 고온·다습한 환경에서 국 조리 작업 중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 후송(58세, 열실신)
 - » 급식조리실은 대형 조리기구의 열기로 폭염에 취약하므로 냉방장치(이동식 에어컨 등) 설치를 통해 실내 온열환경 개선 필요
- 급식 조리실에서 지속적인 조리 작업 중 체온상승, 어지러움, 구토증세 호소(59세, 열탈진)
 - » 조리 시 열기로 폭염에 취약하므로 냉방장치(이동식 에어컨 등) 설치를 통해 실내 온열환경 개선 필요

시설관리업 및 국가 및 지방정부 사업(청소·미화업무 등)



- 바닥 왁스작업 중 인지기능 장애와 어지럼증을 보인 후 퇴근 중 길가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(66세, 열사병)
 - » 시설관리업의 경우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므로 민감군으로 구분, 추가 관리 필요
- 출근 후 청소와 제초작업을 연이어 하던 중 어지러움, 두통 등 증세가 나타나 병원 후송(55세, 열탈진)
 - » 청소·미화 작업은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므로 민감군으로 구분, 추가 관리 필요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업



- 해수욕장 소공원에서 쓰레기를 수거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(60세, 열사병)
 - » 대부분 실외 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환경 뿐 아니라, 대체적으로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므로 민감군으로 구분, 추가 관리 필요
-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던중 열사병으로 사망(60세, 열사병)
 - » 옥외작업으로 냉방장치(이동식 에어컨 등) 설치,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준수 철저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